Ⅰ.『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 양성 사업단』 운영지침

제 1 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조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직의 국문 명칭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Homo-D-Biblos) 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칭하며, '4단계 BK21 호모 디-비블로스(Homo D-Biblos) 양성 사업단' 또는 '4단계 BK21 호모 디-비블로스 양성 사업단'로 표기할 수 있다. 영문 명칭은 'Program for Nurturing Leaders in Homo D-Biblos with the Aim to Practice Social Tolerance'이며, 'BK21 Program for Homo D-Biblos'로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제3조(사업) ①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억 보존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증거 확보로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 활용으로 미래를 예측대응하여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디지털 기록의 인간 '호모 디-비블로스(Homo D-Biblos)'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및 국제화 사업
2. 4차 산업학명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분야(Technolgoy) 역량, 가치 있는 정보의 선별・관리・ 분석을 통해 예측대응할 수 있는 정보분야(Information) 능력, 역사와 인간의 입체적 탐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억분야(Memory) 능력, 기록의 보존・평가・진본인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분야(Evidence) 역량에 대한 교육을 위한 사업
3. 보존된 기억으로써 사회적 소외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의제발굴형, 기록의 보존・평가・진본인증을 통한 문제해결형, 가치있는 정보의 선별관리분석을 통한 예측대응형의 3개 연구 분야 특성화를 위한 사업
4. 교육과정 및 연구성과의 공유・활용・소통・확산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본 사업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단의 구성) ① 사업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계약교수, 박사후과정생, 사무국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운영위원회, 3개의 연구부를 둔다(【별첨 운1】 참조).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임기는 7년이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통괄한다.

③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부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도와 사업단의 업무를 통괄하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부단장은 참여교수들과의 협의하에 사업단장이 지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기획/심의, 집행, 평가 등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아 회무를 통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특별사업계획
2. 사업단의 재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계약교수, 박사후과정생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련된 사항
4. 참여대학원생의 선정에 관련된 사항
5.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6.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교육과정 수립, 운영 및 개선에 관련된 사항
8. 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설치목적)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기 위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구성원) 사업단장과 부단장, 각 연구부에서 1인씩 총 3인, 사업 미참여교수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③ (역할과 기능) 사업단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한다.

제9조(연구부) ① 사업단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주체로 의제발굴 연구부, 문제해결 연구부, 예측대응 연구부를 설치한다.

② 각 연구부는 2~3인의 참여교수와 1~2인의 교수급 연구원, 4~5명의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별첨 운2】 참조).

③ 부서별 참여교수의 호선으로 선출된 부서장이 연구부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사업단의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은 행정실장과 조교 2인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 액수는 ‘사업단 예산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④ 단, 사업단 운영의 상황에 따라 참여 및 지원대학생이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제 2 장 참여교수에 관한 지침

제1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이하 "교수" 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참여교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참여교수 임무) 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들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도한다.

제3조 (참여교수 지원) ①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참여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인솔하여 국제학술대회와 해외단기연수에 참가할 경우, 여비(항공료)와 체제비를 전액 지원한다.

② 참여교수의 연구실적과 대학원생 지도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는 성과를 지급하며, 이는 예산운영 시행세칙을 참고로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제 3 장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지침

제1조(신진연구인력 자격) ① 계약교수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에 준한다.

1.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를 취득한자에 한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시에는 급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조(신진연구인력 임용절차) ①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장 혹은 사업단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사업단 참여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임용기간을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③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임용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 학위증명서(석사, 박사)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2. 재임용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연구실적목록 1부
   - 추천서(사업단장 또는 사업단 참여교수) 1부
   - 4단계 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 임용계약서 2부

제3조(신진연구인력 임무) ① 신진연구인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전일제 대학원생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단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2.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 프로젝트를 인솔, 지도할 의무
3. 매학기 참여대학원생 1인 이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논문 게재 및 한국연구재단 등록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지도할 의무
4. 사업단이 마련하는 정기 세미나 지도 및 1년에 1회 이상 학내외에서 발표할 의무
5. 사업단이 진행하는 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포함) 및 학술활동을 수행할 의무
6.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본 사업단 관련 시간강의 의무
7. 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

제4조(신진연구인력 급여) ① 신진연구인력은 월 300만원 이상(년 3,6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지불한다.

② 퇴직금은 연봉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후 1년마다 정산지급하고,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1년 이내의 계약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
③ 4대 보험 중 법정부담금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에서 지원하고, 개인부담금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보험금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5조(신진연구인력 지원) ①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 및 체제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시에도 경비(심사료, 게재료 및 참가비 등)를 지급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업무수행 업적(대학원생 세미나 및 논문 지도, 사업단 행사)과 학술업적이 탁월한 경우 성과를 지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예산운용 시행세칙을 참고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제6조(신진연구인력 강의 및 기타) ①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중단조치) 재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한다.

1. 무단결근 등 복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취업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
4. 본인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사업단에서 지원중단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연구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
6. 질병 등 기타 심신장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퇴직시 처리할 업무) 퇴직시에는 퇴직의사를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사직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통보한다. 퇴직일자가 해당 월의 말일이 아닐 경우 잔여근무 급여환수를 한다.

제 4 장 대학원생에 관한 지침

제1조(참여대학원생 자격)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석사과정생은 입학후 2년이내(4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입학후 4년이내(8학기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기간을 사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2조(지원대학원생 자격) ① 제1조에 해당되면서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본인 명의로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지원대학원생 선발)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소정의 지원대학원생 지원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1. 통상적인 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대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학문 및 사회공헌도, 참고문헌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석사과정은 A4 5장 내외, 박사과정은 A4 8장 내외 분량으로 하되,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으로 한다.

③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과 교체는 1개 학기(6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기 중이라도 참여대학원생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연구부 중 하나에 소속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생을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1.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2. 대학원생 성과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
3. 향후 학업 및 연구계획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지원대학원생은 매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달 둘째 주까지(2월 2주, 8월 2주) 연구계획서에 의해 연구된 연구보고서를 석박사 과정 동일하게 A4 5장 내외 분량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국제학술지와 학술진흥재단 등록 학술지(등록후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게재 후 해당논문이 게재된 논문집을 제출한다. 만약, 등록 학술지의 출간이 늦어진 경우 학회가 발행하는 게재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음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⑦ 연구보고서 제출여부와 연구내용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평가는 다음 학기 참여대학원생 선발 심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권리와 의무)

① 지원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대학원생에게 예산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장학금을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한다.

2. 연구장학금 이외에 국제적 연구기회 경비, 학술연구 활동비, 학술진흥비를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 권리
3. 사업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할 권리
4. 사업단의 참여교수, 계약교수로부터 사업단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5. 기타 규정이 정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② 지원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1주당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2. 매학기별 연구계획서를 매학기 참여대학원생 신청과 함께 제출할 의무
3. 매학기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기초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
4. 사업단 참여가 확정된 후에 작성한 동의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진로 현황분석을 위해 졸업여부, 취업여부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 등)
5. 1개 학기 이상 장학금을 받은 박사과정생·박사수료생은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회(등록후보 학회 포함)에서 년 1회 이상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에 년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할 의무
6. 석사과정생의 경우 1학기 째부터 한국연구재단 등록학회(등록후보 학회 포함)의 학술대회 또는 본 사업단 자체 세미나에서 1년에 1회 이상 발표하고 자체 논문집에 년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할 의무
7. 사업단의 연구용역사업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의무
8. 사업단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
9. 기타 사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10. 취업, 휴학 등 연구지원금의 지원중단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고할 의무

③ 직장인 대학원생이 무급 휴직 상태일 경우 휴직기간에 한해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인정하여 참여대학원생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무급 휴직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단의 연구과제 외에 별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도 사업단의 연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중과제 수행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징계) ① 대학원생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사업단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연구지원금 해외연수지원금 등을 도박·주식거래·투기 등의 영리목적과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4. 기타 사업단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징계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징계 수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참여대학원생 자격 박탈: 연구지원금 취소
2. 연구지원금 환급 : 당해 학기 및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지급되었던 지원금 환수

3. 참여대학원생 영구 제명: 참여대학원생 신청자격 영구 박탈

④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에 대해 징계 대상자는 1회에 걸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1주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6조(운영) ① 듀얼멘토링 제도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을 지도한다.

1. 첫 번째 멘토링(1st 멘토링) 기간은 입학부터 지도교수 선정 전까지이며,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방향, 대학원 생활 등을 지도할 수 있는 멘토교수가 배정된다. 【서식 1】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두 번째 멘토링(2nd 멘토링) 기간은 지도교수 선정 이후이며, 참여대학원생은 전공 관련 교원 중에서 지도예정 교수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에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서식 2】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단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단 자체적으로 각종 평가를 실시한다.

제2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① 사업단 자체평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과 부단장, 각 연구부 3인과 사업 미참여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 자체평가를 위원회 구성, 사업평가 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평가결과 활용 방안 수립 및 사후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

제3조(자체평가위원회의 업무 및 절차)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 자체평가(사업참여 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학생들에 대한 실적평가, 사업분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는 【별첨 운3】에 따른다.

제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의 결과는 종료와 동시에 보고한다.
② 평가의 결과는 다음 단계 사업추진에 반영한다.

제 6 장 국제화 사업에 관한 지침

제1조(장단기 해외연수대학원생의 선발) ①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는 단기연수(국제학회)와 장기연수로 구분하되 15일 이내는 단기연수로 15일 초과는 장기연수로 구분한다
③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외연수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2. 연수(국제학술회의 참가 포함)의 교육 연구적 필요성
3. 지원자의 교육 ·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 (【서식 6】제출)
④ 해외연수는 신청서와 함께 연수계획서를 아래의 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연수계획서는 해외연수 출발일 한 달 전까지 제출한다.
2. 해외연수계획서는 통상적인 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대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학문 및 사회공헌도, 참고문헌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해외연수계획서에 해외연수 결과를 활용할 향후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4. 해외연수계획서는 단기연수일 경우 석사·박사과정 동일하게 A4 3장 내외 분량, 장기연수일 경우 석사과정 박사과정 동일하게 A4 5장 내외 분량으로 하되,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으로 한다.
⑤ 해외연수를 완료한 해외연수단은 결과보고서를 해외연수 완료 2주 안에 제출해야 한다.
1. 결과보고서는 장단기를 막론하고 A4 3매 이내로 작성하되 결과보고서는 주요 연수 일정을 개조식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과 항권권 구입 영수증(카드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기타 해외연수시 사용한 증빙 영수증 1종 이상, 해외연수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 1종 이상 제출을 제출해야 한다.
2. 해외에서 연수한 내용은 석·박사를 막론하고 차후 연구실적물 제작(논문 혹은 번역서)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⑥ 해외연수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⑦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회를 참석할 때 체크리스트(【서식 3】)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조(국제화사업 지원기준)
① 해외연수(단기연수와 장기연수 포함)는 연간 1인 1회에 한정하며,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발표자에 한해서 사업단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 2회 이상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단,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은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해외연수는 불가하며, 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지원받는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연구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② 국제협력사업에는 대학원생(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 포함)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해 참여교수도 대학원생 지도를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지원금은 국외여비 지원기준에 준한다.
③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실무위원회는 결과보고서의 심사를 통해 해외연수

순위를 정하고, 이 순위에 따라 차기 해외연수 신청시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교류사업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갈 경우 초청장 및 행사 계획서를 첨부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⑤ 해외연수 및 국제협력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국제협력사업 내용이 다를 경우 기지급한 국제협력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⑥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자는 연수 후 1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조(해외석학 초빙)
① 해외석학을 초빙할 수 있는 사업단의 국제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단 주최 세미나나 강연
2. 국제자문위원회 관련 사업
3. 교환강의 프로그램
4. 공동강의 프로그램
5. 기타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업

② 해외석학 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가 활용 계획서(【서식 4】)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가 활용 이후에는 전문가 활용 결과 보고서(【서식 5】)를 제출해야 한다.
③ 해외석학 초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 장 기타

제1조(규정의 개폐)

①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 발의는 사업단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②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기타 및 예산운용)

①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②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단 예산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예산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개정

① 본 규정의 시행에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운1】 사업단운영위원회 구성원

구분	성명	직위
위원장	김　건	사업단장
부위원장	장춘갑	사업부단장, 의제발굴 연구부
위원	윤상원	의제발굴 연구부장
〃	윤은하	문제해결 연구부장
〃	유남희	문제해결 연구부
〃	양동민	문제해결 연구부
〃	오효정	예측대응 연구부장
〃	김수정	예측대응 연구부

【별첨 운2】 사업단연구부 구성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의제발굴 연구부(기억)	윤상원	의제발굴 연구부장
	장준갑	의제발굴 연구부
문제해결 연구부(증거)	윤은하	문제해결 연구부장
	유남희	문제해결 연구부
	양동민	문제해결 연구부
예측대응 연구부(정보)	오효정	예측대응 연구부장
	김수정	예측대응 연구부

【별첨 운3】 사업단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

① (목적) 사업단의 자율적인 사업개선을 목적으로 부진사항이나 사업상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다.

② 사업단의 운영, 사업단의 비전 및 사업목표, 사업단 구성 및 관리, 연구, 산학협력 업적, 교육과정, 대학의 행/재정적인 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절차) 1. (평가 대상기간 및 시기) 평가 대상기간은 1년(전년도 9월 1일 ~ 당해연도 8월 31일)이며 평가는 매년 9월~10월 중에 실시한다.

2. (자료제출) 평가내용 및 지표에 맞게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다.

3. (평가결과보고)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단은 이를 정리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4. (평가결과활용) 사업단의 평가 결과는 사업단 구성원의 성과급 기준 및 사업단 차년도 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한다.

Ⅱ.『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 양성 사업단』 예산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Homo D-Biblos) 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의 예산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에게는 월 700,000원 이상을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에게는 월 1,300,000원 이상을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에게는 월 1,000,000원 이상을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연구, 교육 등의 실적에 의거하여 【서식 6】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① 사업단의 계약교수의 급여는 월 3,000,000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박사후과정생의 급여는 월 3,000,000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의 급여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제3조 (국제화경비 지원)

① 참여교수의 단기 해외연수는 최대 2인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국제협력교류 등 사업단 국제화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단기 해외연수는 최대 1인 1회를 지원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의 단기 해외연수는 최대 1인 1회를 지원한다.

④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를 위한 단기 해외연수 지원은 논문 1편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참여대학원생의 장기 해외연수는 최대 1인 1회를 지원한다.

⑤ 해외석학 초빙에 필요한 항공료, 논문발표비, 토론비, 회의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되, 1인 기준 최대 5,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⑥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단기 해외연수의 지원에 준하여 지원한다.

⑦ 15일 초과의 장기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⑧ 한국연구재단 여비규정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되, 1인당 최대 10,000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⑨ 모든 국제화 경비는 사업단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항목별 지급기준은 전북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조 (성과급)

① 참여교수에게는 연구, 교육, 행정 등의 실적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서식 7】따라 차등지급하며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매년 2월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에게 1년 동안의 연구, 교육, 행정 등의 실적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에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매년 2월 성과급을 지급한다. 월급여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업단 운영 및 예산상황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국내외 학술지 게재지원비)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인 국내전문학술지에 게재시에만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인 국내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시에는 심사료 및 게재료를 지원한다.(단, 논문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임)

③ 국제 전문학술지(A&HCI, SSCI, SCI, SCIE)에 주저자로 게재한 논문은 심사료 및 게재료를 지원한다.

④ 국제 전문학술지 게재 목적을 위해 영문으로 논문 작성시 지원금을 요청한 경우 교정료를 지원한다.(단, 일반 교정만 지원, 부가서비스 제외)

제6조 (국내 학술활동지원비)

① 국내 학술대회에 논문발표, 사회, 토론을 위해 참가할 경우 학회참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 및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워크샵 등에 참가하는 대학원생에게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세칙의 개폐)

① 상기 시행세칙의 개정 발의는 사업단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② 상기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기타사업)

① 상기 시행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② 상기 시행세칙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단 예산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 이 시행세칙은 본 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지도교수(지도위원) 선정 결과 보고서

지도교수(지도위원) 선정 결과 보고서

1. 학생 주요 인적사항(Student's Information)

과 정 (Program)	학 과 (Department)	세부전공 (Specialty)	학 번 (Student ID No.)	성 명 (Name)	비 고 (Remark)
석사 박사 석박사	기록관리학과	기록관리학			듀얼멘토링 -1st 멘토링- (생활지도교수 선정)

2. 선정 내용

구 분	소속학과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소지학위	비 고
지도교수						
지도위원						

위와 같이 지도교수(또는 지도위원)를 선정 하였기에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지도교수 : (인)

<u>학과주임교수 귀하</u>

※ 참고 사항

1. 「지도교수」 선정 요령
   가. 선정시기 : 전반 및 후반기 과정별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
   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
     (1)석사과정 : 우리대학교 소속 학과 재직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2)박사과정 : 우리대학교 소속 학과 재직 전임교원으로 하되,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다. 선정요령 : 학생의 전공 관련 교원 중 학생과 지도예정 교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지도교수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학과 임의배정은 없도록 할 것)
2. 「지도위원」 선정 요령
   가. 선정시기 : 전반 및 후반기 박사과정 입학 후 1년 이내에 선정
   나. 선 정 자 : 지도교수
   다. 지도위원수 : 3명(지도교수 포함)
   라. 지도위원 자격 :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마. 선정요령 : 지도교수가 학생과 충분한 의견교환 후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은 후 에 논문 심사를 담당하여야 함에 유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3.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 내용 관리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신입생에 대하여 전공분야를 파악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분야의 교원으로 하여금 지도교수로 선정되게 하여야 함.

【서식 2】 지도교수(지도위원) 변경 보고서

지도교수(지도위원) 변경 보고서

1. 학생 주요 인적사항(Student's Information)

과　　정 (Program)	학　과 (Department)	세부전공 (Specialty)	학　번 (Student ID No.)	성　명 (Name)	비　고 (Remark)
석사 박사 석박사	기록관리학과	기록관리학			듀얼멘토링 -2nd 멘토링- (논문지도교수 선정)

2. 변경 후 내용

구 분		소속학과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소지학위	비　고
지도교수	변경 전						
	변경 후						
지도위원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지도교수(또는 지도위원)를 변경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변경 후 지도교수 :　　　　　　　　　(인)

【서식 3】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정한 동료심사를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곳에 ☑ 하시오.

①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 입니까?	예(□), 아니오(□)
②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편집위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④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⑤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Think/Check/Submit 캠페인(http://thinkchecksubmit.org)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정한 동료심사 및 발표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②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④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예(□), 아니오(□)
⑤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Think/Check/Attend 캠페인(https://thinkcheckattend.org)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논문 투고자 또는 학회 참석자 ____________________(인)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 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

【서식 4】 전문가 활용 계획서

전문가 활용 계획서 (국내 □ / 해외 □)

* 해외학자의 경우 소속, 직급, 구분 내용은 현재 기준(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초청자</td><td>소속</td><td colspan="2">전북대학교</td><td>직위</td><td></td></tr>
<tr><td>이름</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3">피
초
청
자</td><td>성명
(영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소
속</td><td>기관/대학</td><td colspan="2"></td><td>직위</td><td></td></tr>
<tr><td>소재지
(국가)</td><td colspan="2"></td><td>E-mail</td><td></td></tr>
<tr><td colspan="2">초청기간</td><td colspan="5">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td></tr>
<tr><td colspan="2" rowspan="2">활용계획
및
내용</td><td colspan="2">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요계획
&
세부일정
(구체적으로
기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상기와 같이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____________________(인)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 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td></tr>
</table>

【서식 5】 전문가 활용 결과 보고서

전문가 활용 결과 보고서 (국내 □ / 해외 □)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초청자</td><td>소속</td><td>전북대학교</td><td>직위</td><td colspan="3"></td></tr>
<tr><td>이름</td><td></td><td>연락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피
초
청
자</td><td>성명
(영문)</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소
속</td><td>기관/대학</td><td></td><td>직위</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
(국가)</td><td></td><td>E-mail</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초청기간</td><td colspan="6">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td></tr>
<tr><td colspan="2" rowspan="8">활용내역
(구체적으로
기술)</td><td>일자(시간)</td><td colspan="3">활동내역 / 수행내용</td><td>대상자</td><td>비고</td></tr>
<tr><td>월 일( )</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월 일( )</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월 일( )</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월 일( )</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월 일( )</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월 일( )</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월 일( )</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 colspan="2">활용결과 및
성과</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상기와 같이 전문가를 초청하여 활용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________________ (인)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 양성 교육연구단장 귀하</td></tr>
</table>

【서식 6】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성과 평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성과 평가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연구책임자 성명**	(인)
지원기관	교육부, 연구재단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Homo-D-Biblos) 양성 사업단		
성과평가기간	2020.00.00. ~ 2020.00.00		

평가영역[점수]			연구 [20]			교육 [20]	산업사회기여도 [15]		사업단 기여도 [45]	총점 [100]	평가 등급
평가항목			논문 게재 (편) 주저자 / 공저자	저서 (편)	학술 대회 발표 (건) 주저자 / 공저자	성적 ※100점 환산점수	연구 과제 참여 (유/무) ※ BK21, 중복 제외	표준화, 외부강연, 협약체결 등 (건)			
가중치 / 참여 대학원생			4.0 / 2.0	4.0	3.0 / 1.5	0.2	5.0	1.0	(지도교수 및 사업단장이 평가)		
성명	과정	입학시기									
	석										
	박										
	석박										
	석수										
	박수										

<평가등급 산출 기준>

평가대상	평가등급 구분	평가점수(점)
참여대학원생	A	70 이상
	B	50 ~ 70
	C	30 ~ 50
	D	30 미만

* 평가등급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서식 7】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성과 평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성과 평가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연구책임자 성명	(인)
지원기관	교육부, 연구재단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호모 디-비블로스(Homo-D-Biblos) 양성 사업단		
성과평가기간	2020.00.00. ~ 2020.00.00		

평가영역[점수]	연구 [20]			교육 [20]	산업사회기여도 [15]		사업단 기여도 [45]	총점 [100]	평가 등급
평가항목	논문 게재 (편) 주저자 / 공저자	저서 (편)	학술 대회 발표 (건) 주저자 / 공저자	강의 평가 점수	연구 과제 (건) (교내연구비 제외)	외부강연, 협약체결, 표준화 등 (건)			
가중치 / 참여교수	4.0 / 2.0	3.0	3.0 / 1.5	0.2	3.0	1.0	(사업 단장이 평가)		

<성과급 기준>

평가대상	평가등급 구분	평가점수(점)	연구수당 지급액(만원)
참여교수	A	70 이상	~480
	B	50 ~ 70	~320
	C	30 ~ 50	~160
	D	30 미만	0

* 성과급 지급액은 평가등급에 따라 연구수당 기여도(%)를 산출하고 연구수당 예산액에 연구수당 기여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참여교수들의 기여도의 합은 100%이다.

* 사업단 운영 및 예산상황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